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5. 11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219호로 202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위탁 및 운영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외에 타 기관에 위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독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영등포문화재단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5항)
- 나.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위탁선정 절차 생략(안 제9조제6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소년기본법」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 1. 23. ~ 2. 12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9조에서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영등포문화재단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○ 검토결과,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의 위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외에 영등포문화재단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기존에 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운영관리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청소년독서실 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증진과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- 2. "청소년육성"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,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.
- 3. "청소년활동"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·교류활동·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.
- 4. "청소년복지"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 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・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- 5. "청소년보호"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·물건·장소·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<u>"청소년시설"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</u>는 시설을 말한다.
- 7. "청소년지도자"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
 - 나.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 - 다.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8. "청소년단체"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2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**제4조(재단의 사업)**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
 - 2. 영등포구민회관 및 대림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
 - 3.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
 - 4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· 관리 및 조사 · 연구
 - 5. 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
 - 6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